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8. 12 선고 2019가단55508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20. 7. 8.

판결 선고 2020. 8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48,538,303원 및 그 중 30,082,125원에 대하여 2018. 8. 18.부터 2020. 6. 10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현주

별지